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71 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서영석・이기헌・이해식

박홍배 · 소병훈 · 윤종군

김재원 · 최기상 · 윤건영

박상혁 • 전진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,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, 2호를 허 가한 것에 이어 올해 3,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디지털을 접목한 보 건의료 분야의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있음.

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은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 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의 경우 수 동휠체어, 목욕의자, 성인용보행기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운 영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. 이에 "용구"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"용품"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3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"용구를"을 "용품(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)

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	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-		
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			
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		
1. 재가급여	1		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	
바. 기타재가급여 : 수급자의	ㅂ}		
일상생활 • 신체활동 지원			
및 인지기능의 유지・향상			
에 필요한 <u>용구를</u> 제공하	<u>용품(소프트웨어</u>		
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	를 포함한다)을		
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			
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		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